

우체국금융의 역사

박 재 석*

I. 우체국금융의 연혁

우체국금융제도는 1861년 영국에서 시작된 후 유럽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현재는 그 제도, 취급방법, 내용 등에 있어서 나라마다 다소 다른 점이 있지만 많은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화와 함께 체신금융사업이 도입되었고 최초로 시행된 제도는 郵便貯金 및 郵便換 업무였다. 그 후 정부는 오랫동안 우편저금사업 및 국민생명보험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경험과 공신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왔다.

그러나 체신금융사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통신사업 전업주의 등을 이유로 1977년에 체신금융을 농협에 이관시키는 등 그 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1982년에 제정된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따라 우체국에서 간편하고 신용있는 예금·보험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금융의 대중화를 일구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저축의식을 고취시키고, 보험의 보편화를 꾀하였으며,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3년에 체신금융사업이 재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중단되었던 체신금융사업의 재개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서민대중의 저축

* ETRI 우정물류기술연구부장, jpark@etri.re.kr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체신부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 그리고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아 볼 수 있다. 우체국금융은 소액 가계금융으로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복지 증진 등에 기여하면서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II. 우체국금융의 기능과 역할

우체국금융 사업이 갖는 기능과 역할을 크게 다음의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보편적 금융서비스의 제공이다. 우체국금융은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금 입·출금, 생명보험, 공과금수납, 해외송금 등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국 우체국을 민간 금융기관에 개방하여 신용카드 발급, 증권 계좌 개설, 입·출금 서비스 등 민간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농어촌지역에도 도시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둘째, 친서민 금융서비스의 제공이다. 우체국금융은 저신용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우편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우체국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으로 우편사업 적자를 보전하고, 저렴한 우편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국가재정 및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해 우체국금융에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지원하고 있으며, 우체국금융은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이 투입된 타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매년 공적자금 상황기금을 출연하고 있다.

다섯째, 국민저축 향상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우체국 고유업무 외에 금융서비스 및 생활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체국이 종합봉사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섯째, 온라인망을 통해 발전된 금융서비스를 농어촌지역에까지 고르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성된 자금의 상당부분을 첨단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국가정책사업자금으로 지원하

고 있다.

특히, 서민가계 저축기관으로서의 체신금융의 역할을 보다 자세하게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는 196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고도성장 정책에 힘입어 매년 괄목할 만한 성장으로 국가자립경제의 확립 및 산업구조의 재조정과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이루어 왔으나 농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첨단산업육성자금의 지원과 국민복지 부문에 있어서도 막대한 재정자금의 소요가 예상되고 있어 가계저축을 중심으로 저축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경제여건의 급속한 진전과 경제생활의 안정에 따라 국민들간에는 가계경제를 위한 금융수요가 급증하고 농어촌에서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균등한 금융서비스를 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계저축 부문에 대한 발전적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민간금융기관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민간금융기관의 농·어촌지역 점포망 확대는 여러 가지 여건에 비추어 어려운 입장에 있다.

이에 비해 우체국금융은 농어촌지역은 물론 전국 방방곡곡에 우체국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우체국을 금융창구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저축기반을 확대하고 국민생활 안정과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어느 금융기관보다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 금융기관과 다른 보다 거시적인 의의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체국금융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을 통해 농어촌지역까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발전적 측면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체국을 통한 예금사업을 장기적인 국민가계 저축수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국민의 저축의식을 고양시킴과 동시에 국가경제발전 및 공공사업을 위한 정부재원을 확충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Ⅲ. 우체국금융의 위상 및 과제

우체국예금과 보험은 각각 3.6%와 6.7%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체국예금은 정부기업별 특별회계를 설치토록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우체국예금사업 운영을 위한 우체국예금 특별회계를 설치하였다. 2007년부터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결산이익잉여금 중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우체국예금 평잔의 적정률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는 등 국내금융시장 안정에도 일조하고 있다. 우체국예금의 일반회계전출금은 10,111억원('98~'12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은 3,425억('04~'12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은 64,748억원('03~'10년)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 농어촌 및 도서지역 등 금융소외지역 주민에게 예금, 공과금수납 등의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수요를 충족하고 있다.

우체국금융은 국가적 목적수행을 위해 적정한 혜택과 규제를 가미한 제한적 금융업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국영금융기관으로서 우체국은 국가의 지급보장, 법인세·예보료 등 각종 세금면제, 금융감독원 감독 면제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대출·펀드판매·신용카드 등의 업무취급이 금지되고, 해외송금 한도액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경쟁 심화에 따른 금융소외 계층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친서민 생활금융서비스 제공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우체국금융의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체국금융이 국영금융기관으로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는 다음의 8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소액대출 업무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우체국예금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의 자금운영 범위에 대출업무가 제외되어 있어 일반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금융위기 이후 서민의 금융이용 어려움과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미소금융, 햇살론 등을 통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영금융기관으로서 우체국금융은 관련 법령(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요청하고 전문 인력·조직 확보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체국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와 자립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이익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출 축소이다. 우체국금융은 이익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출로 인해 BIS 비율이 일반은행보다 하락하며 자본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현 추세대로 자본금 적립없이 BIS 비율이 감소되면, BASEL III('13년 도입)에 의해 강화되는 BIS 비율 최소 요구수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익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출의 축소를 통해 우체국예금의 자본건전성 향상과 이에 따른 운용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해외송금 한도액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이다. 국내체류 외국인 수 증가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유학생들의 해외 송금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우체국은 해외 송금의 건당 한도로 인해 이용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송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우체국은 읍면지역 등 소외지역과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저렴한 보편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국영금융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

넷째, 퇴직연금 운용상품 제공 기관으로 참여이다. 우체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17조1항1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 가능한 금융상품 제공기관에 제외되어 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상품 위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여 가입 근로자의 선택권에 제한이 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퇴직연금 운용상품 제공기관에 우체국을 포함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및 사용자 신뢰를 제고하고 퇴직연금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우체국 예금사업의 수익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다섯째,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 규제에 대한 완화이다. 펀드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은행 등 도시지역에 분포한 기관에서만 판매하여 읍면지역의 서비스 선택권에 제한이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가당국(금융위)과 협의를 통해 펀드판매 인가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읍면지역 주민들의 금융편익을 증진하고 저렴한 수수료로 펀드판매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여섯째,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납부요율의 인하 또는 납부대상에서의 제외이다. 우체국금융은

예금보험 대상기관이 아니고, 공적자금도 지원받지 않았으나, 공적자금상환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적자금상환기금 납부요율(0.1%)도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신탁의 납부요율 0.05%보다 높아 우체국금융의 건전성 확보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국영금융기관으로서 우체국금융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일곱째, 환매조건부채권(RP) 시장 및 콜시장에의 참여이다.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환매조건부 채권(RP)거래 및 콜시장에서 자금대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제8-78조)에 의해 제한이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우체국 금융자금의 탄력적 운용과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를 할 수 있다.

여덟째, 우체국 카드서비스 확대이다. 우체국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카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민간 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복지사업, 전자바우처 등 정부정책사업 시행에 따라 카드사와 제휴하여 유류보조금, 출산장려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복지사업이 대부분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우체국은 신용카드서비스 취급이 불가능하여 국가기관으로서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우체국의 카드서비스 규제 완화를 통해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익기반 다각화로 우체국금융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우체국예금사업 연혁

1884. 4. 22 우정총국 설치
1910. 10. 1 우편위체저금관리소 개국(우체국 저금, 생명보험, 연금실시)
1968. 1. 1 기업예산회계법 적용대상에 정부기업에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사업 추가
*기업예산회계법 개정(1968. 1. 1 시행) 및 국민생명보험 및 우편연금특별회계법 폐지
1977. 3. 1 체신부 우편저금·간이보험 업무 농협 이관
*우편저금업무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 국민생명보험업무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
1983. 7. 1 체신예금 및 보험업무 재개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1983. 1. 1 시행), 체신보험특별회계법(1983. 7. 1 시행)
*체신예금 및 체신보험 취급 및 국가보증 지급 근거 마련
*체신보험기금을 설치하여 기금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잉여금으로 조성
1998. 9. 17 체신예금 이자율 및 체신보험 종류 결정의 자율성과 탄력성 확보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1998. 9. 17. 시행)
2000. 3. 1 우체국예금으로 용어변경,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법 제명 변경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개정(2000. 3. 1. 시행)
2000. 7. 1 우정사업본부 출범
2002. 1. 1 우체국보험기금의 명칭을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변경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개정(2002. 1. 1. 시행)
2006. 7. 1 예금·보험 건전성 유지·관리 기준마련 및 금융감독위 협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2006. 7. 1. 시행)
2007. 1. 1 통신사업특별회계를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 분리
*기업예산회계법 개정(2007. 1. 1. 시행)